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83
----------	-----

제안년월일 : 2000년 2월 8일

발 의 자 : ~~5/11~~의원의 10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99. 8. 31) 및 동법시행령('99. 12. 31)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안 제2조,제4조)
- 시 본청관련 실·국장을 "시본청 관련 국장"으로 개정(안제9조)
- "날로 부터"를 "날 부터"로 개정(안 제6조)
- "구좌"를 "계좌"로 개정(안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심의위원의 임기"로 개정(안 제11조)
- "심의회의 간사" 및 "심의회의 수당"을 "심의회 간사" 및 "심의회 수당"으로 개정(안 제14조,제15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성남시조례 제 호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일로부터”를 “일부터”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구좌에”를 “계좌에”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시 본청관련 실·국장”을 “시 본청관련 국장”으로 한다.

제11조중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심의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4조중 “심의회의 간사”를 “심의회 간사”로 한다.

제15조중 “심의회의 수당”을 “심의회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2. “회기수당”	2. “회기수당”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 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 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 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 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회기수당	 회기수당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남,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보다 초과 지급할수 없다.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남,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보다 초과 지급할수 없다.	2.	2.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회기수당	 회기수당
제6조(보상금의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보상금의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②(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제6조(보상금의청구) ①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u>사망일로부터</u>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의장 (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성남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u>사망일로부터</u>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의장 (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성남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사망일부터	② 사망일부터
		날부터	날부터
		날부터	날부터

현행	개정 (안)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u>구좌</u>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시 본청 관련 <u>실·국장</u>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임기)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u>날로부터</u>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계좌 에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시 본청 관련 국장 1인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위원 임기)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날부터 제14조(심의회 간사) 제15조(심의회 수당등)